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권 징 조 례

BOOK OF DISCIPLINE



1974 년 총 회 승 인

2005 년 총 회 개 정

2021 년 총 회 승 인

2023 년 1 월 출 판

권 징 조 례

목 차

서 문

- 1 장 원칙
- 2 장 정의 (定義)
- 3 장 개인적이거나 비공개적인 사건에 대한 절차
- 4 장 공적이거나 공개적인 사건에 대한 절차
- 5 장 항소
- 6 장 자문 및 지원요청
- 7 장 복권
- 8 장 탈 퇴
- 9 장 기타사항들

부 록

- 1 각종양식
- 2 절차 및 진행도표

권 징 조 례 서 문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며, 주님의 몸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필수적인 핵심은 개개인의 거룩함이 성장하는 것에 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치리이다. 치리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廣義)와 좁은 의미(狹義)의 치리를 생각할 수 있다. 광의(廣義)의 치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할 틀(규범)을 말한다. 개개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교회는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협의(狹義)의 치리는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따라 교회치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을 지키며, 죄를 범하고 있는 신자를 바로 잡고, 불순종하는 성도를 회개시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치리권을 주셨다. 본 권징조례는 유형교회 들에게 공식적 징계의 원칙과 절차를 보여주는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의 문서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이시므로, 치리는 반드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장로직분을 받은 사람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치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치리는 안수받은 직분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리는 장로들이 교회치리회(재판국)원으로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

중히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도록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장로들이 판결한 재판 결과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모든 사법절차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모세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경고했다. 권징조례의 모든 장(章)에 있는 법규들은 교회치리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공정하고, 동등하며,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공정한 진행,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증거에 의한 성경적인 치리는 죄와 이단과 도덕적타락 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이런 법적인 것들만으로는 결코 회개와 화목과 복권을 통해 다시 거룩케 하려는 치리의 원래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적치리는 기도의 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의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배려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제 1 장 원 칙

- 1.1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란과 치리사건들을 재판하는 최고재판관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 1.2 성경만이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최고, 최종적인 법이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 설명, 가르치는 표준서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ARPC 가 승인한 정치, 권징조례, 모범예배이며, 치리를 위한 사법적절차는 이에 따라 행해진다. 모든 치리회는 성경에 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범죄나 범죄의 증거로 여길 수 없다.
- 1.3 교회치리의 목적은¹ (A) 잘못된 범죄를 고치고³ (B)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⁴ (C)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요소들을 들어내 알려 제거하고;⁵ (D)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고;⁶ (E) 복음의 진리를 촉진하고;⁷ (F)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예방하고;⁸ (G) 하나님의 법의 존엄성을 유지⁹하므로서 교회의 평안, 순결, 성장, 화합²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¹ WCF XXX.3, 1 Corinthians 11:31-32.

² Acts 9:31, 1 Corinthians 14:33.

³ 2 Corinthians 7:8-13; 13:9, Galatians 6:1-2.

⁴ 1 Corinthians 5:7, Titus 1:10-11.

⁵ 1 Corinthians 5:7, Galatians 2:11-14.

⁶ 1 Peter 1:7.

⁷ Titus 1:9.

⁸ WCF XXX.3, Matthew 5:13, 1 Corinthians 11:29-32.

⁹ 1 Corinthians 5:7-8; 11:17-26.

- 1.4 치리의 시행은 교회치리회의 의무이다.¹⁰ 치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고발자가 없어서 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¹¹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치리회에 주신 권한행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¹²
- 1.5 교회의 치리는 항상 성경에 따라 목양하는 자세로 시행돼야 한다.¹³ 감시, 방어뿐 아니라, 안내, 양육, 회복 또한 이루도록 해야 한다.¹⁴
- 1.6 교회는 죄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¹⁵ 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지만,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어둠에 숨어 있도록 용납해서는 안된다. 모른척 넘어가는 죄는 개인과 가족과 교회¹⁶를 파괴하게 될 뿐이다.

¹⁰ WLC Q.129, Acts 20:28, Ephesians 4:11-13,
2 Timothy 2:2, Titus 1:5-10, 1 Peter 5:2-3

¹¹ Deuteronomy 19:15, 2 Corinthians 13:1-3, 1 Timothy 5:19.

¹² WCF XXX2, WLC Q.130, 1 Thessalonians 5:12-13,
Hewbrews 13:7,17.

¹³ 1 Peter 5:1-5.

¹⁴ Luke 15:1-7, John 10:1-18.

¹⁵ Luke 21:1-3, 1 Corinthians 5:6-7.

¹⁶ Matthew 16:11-12, 2 Peter 3:17, 2 Timothy 3:6-8.

제 2 장 정 의

- 2.1 **인정.**¹⁷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정은 범죄를 추궁하는 단계에서 인정하는 자백과는 다르다.
- 2.2 **권계.** 잘못하고 있는 교인을 비공개적으로 불러 회개케 하는 것이다. 권계는 견책과는 다른 것이다. 권계는 장로들이 단체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인을 불러 범죄를 회개하게 하는 비공개적 조치이다. 권계는 아직 치리단계에 속한 조치는 아니므로 공적인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권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아직 치리를 받은 것이 아니다.
- 2.3 **변호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처리절차를 돕거나 대리하는 ARPC 에 소속된 교회의 장로를 말한다.
- 2.4 **혐의주장.**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데, 통상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 2.5 **항소.**¹⁸ 판결이 이루어진 후, 판결한 치리회보다 상위에 있는 상급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제 5 장 참조)

¹⁷ 시편 59:12, 사도행전 8:1-3, 로마서 16:18, 빌립보서 3:19, 요한1서 1:8.

¹⁸ 사도행전 11:1-4; 25:11

2.6 치리.¹⁹ 교회치리회(재판국)가 시행하는 공식적인 치리이다. 치리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치리(A부터 D까지)가 있다. 적절한 치리의 시행은 범죄인이 자백하거나 범죄가 확인된 경우 또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치리조치는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며, 범죄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가능하다면 범죄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치리부터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치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치리를 내리는 재판국은 치리의 시행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당회는 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²⁰ 견책, 정직, 면직, 출교의 치리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치리받은 사람이 복권되어, 치리가 해제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치리를 받은 사람은 그 때까지 계속 “치리 중”에 있는 것이다.

A. 견책.²¹ 범죄한 사람에게 본인의 유죄함과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훈계하는 교회치리회의 공식적인 책망이다. 견책은 치리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돼야 한다. 견책받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치리의 징계를 시행하는 교회치리회는 치리 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보살피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치리가 아무 효과가 없으면 치리회는 그 사람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¹⁹ WCF XXX, FOG 6.8C.

²⁰ 모든 교회치리회는 범죄가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행해진 범죄인이 개인적인 범죄인가에 따라, 그 범죄의 성격과 범위를 정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치리처리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나 공개적인 범죄인 경우, 이 사실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널리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직, 면직, 출교의 치리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공개를 필요로 한다.

²¹ 시편 50:21; 14:5, 잠언 17:10, 마가복음 8:33, 누가복음 17:3, 디모데전서 5:20, 디모데후서 4:2, 디도서 1:9,13; 2:15

- B. 정직.²² 범죄인의 성찬참석과 교회직분을 정지시키는 치리이다. 수찬정지(성찬참석금지)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직분정지는 일정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인이 교회 치리회가 인정할 정도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직분정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고 범죄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범죄인이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범죄인이 교회직원인 경우, 수찬정지는 동시에 직분정지도 수반한다. 그러나 직분정지의 경우는 수찬정지까지 수반하지는 않는다. 교회치리회는 범죄인이 회개하는지를 살펴, 정직을 해제할 수도 있고,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치리를 내릴 수도 있다. 정직처벌은 그 사람이 속한 교회의 교인들과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치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 C. 면직.²³ 안수받은 직분을 박탈하는 치리로서, 다른 치리가 추가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면직처벌은 교회의 교인들과 소속된 교회치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²² 디모테전서 3:1-7, 디도서 1:15-16; 3:10-11, 마태복음 3:8.

²³ (이전에는 Deposition이란 단어를 썼음) 정치 10.3K, 사도행전 1:15-20, 디모테전서 1:10-11

D. 출교.²⁴ 범죄인을 소속된 유형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고 내쫓는 처벌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에 극도로 어긋나는 범죄인 경우나 출교보다 가벼운 처리를 받고도 계속 끈질기게 범죄하는 경우에 출교로 처리할 수 있다. 출교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도 자매도 아니다; 교인들은 이 사람을 교회 밖에 있는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져야 할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할 뿐이다. 출교처벌은 교회의 교인들과 소속된 교회치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2.7 **기소.** 사건조사결과, 마땅히 치리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므로 치리를 받아야 된다고 기술한 기소장을 말한다.

(부록 1, 양식 1 참조)

2.8 **교인.**²⁵

A. 수찬유자격 교인²⁶들은 치리의 대상이다.

B. 수찬무자격 교인²⁷은 당회의 감독 가운데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치리를 받는다. 수찬무자격교인이라도 18세가 넘었으면 당회가 직접 관리하며 치리의 대상이 된다.

C. 준교인²⁸은 치리의 대상이 된다; 치리 후 준교인의 소속교회에 통지해야 한다.

2.9 **서기.**²⁹ 치리회(재판국)의 모든 기록과 행정을 맡은 치리회원이다.

²⁴(이전에는 Expulsion 이란 단어를 썼음) 고린도전서 5:5,
데살로니가전서 3:14-15, 디모데전서 1:20, 디도서 3:10-11.

²⁵ 로마서 12:5, 고린도전서 12:12

²⁶ 정치 4.1; 4.4.F; 4.5A(7).

²⁷ 정치 4.2.

²⁸ 정치 4.3.

²⁹ 정치 6.12; 10.10; 12.11.

2.10 **이의서.** 교회치리회의 행위나 결정에 항의하는 서면이다.

2.11 **자백.**³⁰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회개를 수반한다.

2.12 **법정모독.**³¹ 교회치리회(재판국)의 합법적인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그리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관계당국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치리가 뒤 따른다. 교회치리회(재판국)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경우는 더 이상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치리할 수 있다.

2.13 **교회치리회(재판국).**

A. **당회.**³² 교회의 하급치리회(재판국)이며, 개 교회의 시무장로들로 구성된다. 당회는 목사를 제외한 모든 소속 교인들에 대한 1차 재판권을 갖는다. 당회는 범죄에 관련된 교인을 권계하거나 견책, 징직, 수찬정지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B. **노회.**³³ 당회와 총회의 중간에 있는 교회의 중급치리회(재판국)이며, 일정지역 내에 있는 목사들과 교회의 대표로 파송된 총대장로들로 구성된다. 목사들에 대한 1차 재판권은 노회에 있다.

³⁰ 시편 32:5; 51:3-4, 야고보서 5:16, 요한1서 1:9.

³¹ WLC.Q.127: Q.128, 잠언 16:18, 로마서 13:1-2, 히브리서 3:15; 12:5-6.

³² FOG 6; 6.8C, 베드로전서 5:1-5, 디모데전서 5:17, 디도서 1: 5, 야고보서 5:14.

³³ FOG 10, 사도행전 15:22, 베드로전서 5:1.

C. **총회.**³⁴ 교회의 최고치리회(재판국)로서, 목사들과 ARP 교단 내의 모든 교회들이 대표로 파송한 총대장로들로 구성된다. 총회는 “신앙논쟁, 양심에 관한 사건에 대해 판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공적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규칙과 안내사항을 정하고, 또한 교회정치에 대한 법을 정하며; 행정실책에 대한 소원수리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법령과 결정들을 정하며,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말씀에 의해 임명되고 제정 되었으므로, 단순히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령으로 알고, 그 권위에 대한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³⁵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최종해석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치리회이다.

2.14 **치리진행.**³⁶ 치리의 시작부터 마칠 때 까지, 따라야 할 진행 절차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히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 (A) 서면으로 된 기소장 (B) 소환 후 청문 (C) 증거제시 및 변론기회 (D) 증인들의 대질심문 (E)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³⁷ (F) 기소건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권리.³⁸

³⁴ FOG 12, 출애굽기 18:19-23, 여호수아 24:1, 사무엘상 8:3, 시편 119:36, 베드로전서 5:2.

³⁵ WCF 31.3.

³⁶ 사도행전 15:19; 22:28, 고린도전서 14:40.

³⁷ 로마서 2:11, 골로새서 3:25.

³⁸ 전도서 8:11.

2.15 **자격상실.**³⁹ 치리회원 중, 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재판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리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 A. 양심의 문제를 느끼는 치리회원은 스스로 사퇴한다.
- B. 기소위원이었던 장로는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판결에 참여 할 수 없다.
- C. 하급치리회의 재판에 치리회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동일 사건에 대한 상급치리회의 치리회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 D. 치리회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초기나 결격사유의 근거가 들어난 즉시 나머지 치리회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2.16 **장로.**⁴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안수 받은 남 자이다. 노회에 소속된 안수받은 목사도 장로이다.

2.17 **Entity(기관).** ARPC 내에 있는 기관들.

(예. 당회, 노회, board, commission, committee 등)

2.18 **증거.** 재판에서 기소할 범죄라고 확정하거나 기소할 범죄가 아니라고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신명기 19: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증거는 성경적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한 사람뿐 일지라도, 그 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범죄로 확정할 수 있다.

³⁹ 사무엘상 8:3, 시편 119:36, 베드로전서 5:2.

⁴⁰ 정지 6.1-4, 출애굽기 18:19-23, 디모데후서 2:2, 디도서 1:5.

2.19 **증거물.** 소송진행 중,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며, 진실된 것이라고 재판장이 인정하는 서류나 물건은 증거로서 제출이 허용된다.

2.20 **임무수행실패.** 교회치리회가 사법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거나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를 말한다. 임무수행실패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이외에도 있지만): 유죄의 정황이 큰데도 사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는 하지만, 결과가 마땅히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에도 기소,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했지만, 기소된 범죄인을 치리로 판결해야 할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재판에 실패하거나, 치리회가 ARPC 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처리한 경우.

2.21 **조사관.**⁴¹ 치리회가 범죄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임명한 ARPC의 장로이다. 치리회는 ARPC 내의 다른 치리회에 속한 장로를 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장로는 임명한 치리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면접하여 해당범죄사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확하고 유효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자신을 임명한 치리회에 보고한다. 치리회의 지시에 따라 서면으로 기소장을 작성한다. 조사관은 재판시 기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책임지고 제시해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기소인이 된다.)

2.22 **목사.**⁴²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ARPC 교단의 노회에 속한 목사이다.

⁴¹ 아모스 7:7-8, 스가랴 2:1-2

⁴² 정치 91; 9.3; 9.5; 10.3k

2.23 **재판장**.⁴³ 치리회에서 재판을 인도하는 책임자이다.

2.24 **범죄**.

- A. 성경이나 ARPC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말, 행동 혹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행위이다.⁴⁴ 모든 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다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은 아니다.⁴⁵ 범죄가 범죄인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의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교인들의 신앙, 행동, 증인 혹은 영적상태에 해를 줄 때 치리를 한다.
- B. 범죄는 개인에게 행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행한 것인가와 사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로 분류된다.⁴⁶
1. 개인적인 범죄는 다른 개인에게 행한 범죄이다.⁴⁷
 2. 일반적인 범죄는 한사람 이상에게 행하거나 어떤 특정한 한사람이 아닌 여럿에게 행한 범죄이다.
 3. 사적인 범죄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알고 있는 범죄이다.⁴⁸
 4. 공적인 범죄는 통상 교회 내에서나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이상에게 알려진 범죄를 말하며, 반드시 많은 사람 들에게 알려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⁴⁹

43 WCF XXV.6, 정치 6.10-19; 10.10; 12.6; 12.9; 12.10; 12.11; 12.15, 사도행전 15:13-19

44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WSC) Q.14, 요한일서 3:4

45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WLC) Q150-Q152, WCF VI.6; XI.5, 시편 89:30-33

누가복음 22:31-32

46 디모데전서 5:24.

47 마태복음 18:15, 고린도전서 8:12

48 마태복음 18:15.

49 창세기 37:23-24, 고린도전서 1:11.

5. 예를 들어, 한 개인에게 가한 범죄라도 대중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한 것이라면, 공적인 범죄로 취급된다.⁵⁰

C. 범죄는 3가지로 분류 된다: (1) 이단문제,⁵¹ (2) 도덕적인 범죄,⁵² (3) 교회치리회를 모독한 범죄(법정모독죄).⁵³ 죄가 치리할 수준에 이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회치리회는:

1. 범죄의 “심각성”과⁵⁴ 치리의 성격과 목적을⁵⁵ 고려한다.
2. 통상 교회에서 치리한 사건들에 해당하는 종류 인지를 고려한다.⁵⁶
3. 특히 위선적이거나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법 위주로만 다루지 않도록 자제한다.⁵⁷
4. 치리를 행사하는 어려운 임무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⁵⁸

D. 죄라는 것, 그리고 죄를 짓게 된 사정은 수없이 많으므로, 그 범죄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공식은 없다. 교회의 직원들과 치리회는 자신들도 나중, 상급치리회에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⁵⁰ 고린도전서 6:5-6.

⁵¹ 갈라디아서 1:8-9.

⁵²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 Q.98, 고린도전서 5:1-2

⁵³ 디모데후서 3:8.

⁵⁴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 Q. 151.

⁵⁵ WCF XXX.3.

⁵⁶ 신명기 32:7, 로마서 15:4, 고린도전서 10:11.

⁵⁷ 갈라디아서 6:1-5.

⁵⁸ 예레미야 6:14, 히브리서 12:5-6.

2.25 **사법우선권.** 교회의 교인이나 직원에 대해 1차재판권을 갖는 치리회에 있다. 교회의 교인들이나 치리장로들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는 치리회는 이들이 등록, 소속된 교회의 당회이다; 목사의 경우에는 목사가 속한 노회가 1차재판권을 가진 치리회이다. 특별한 경우, 사법우선권을 가진 치리회가 속한 지역 내의 상급치리회가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 사법권을 인수하는 경우:

- A. 항소가 있어, 상급치리회가 사건에 대해 사법우선권을 갖는다.
- B. 소원이 있어, 상급치리회가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건에 대해 사법우선권을 갖는다.
- C. 당회(치리회)가 사법권행사에 실패한 경우, 같은 노회에 속한 2개 교회가 노회가 사법우선권을 인수받기를 현의할 수 있다. 현의서는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회의 과반수가 당회의 실패를 인정하면, 노회가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 D. 노회가 사건처리에 실패한 경우, 2개 이상의 노회가 총회에 사법우선권을 인수받기를 현의할 수 있다. 현의서는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총회의 과반수가 노회의 실패를 인정하면, 총회가 사건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

2.26 **재판장.** 치리회가 치리회 의장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 치리회의장이 재판을 진행한다.

2.27 **기록.**⁵⁹ 모든 교회치리회들은 다음에 명기된 사항들을 포함, 그 외에 사건처리 중에 사용된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 한다; 기소장 혹은 소원서; 조사보고서; 증언, 녹음 혹은 기록서; 증거물; 주문(판결문).

⁵⁹ 시편 102:18, 역대상 24:6.

2.28 **자문 및 지원요청.**⁶⁰ 하급치리회가 상급치리회에게 맡은 사건에 대해 조언이나 지시 혹은 사건전체를 맡아 달라는 서면요청이다. 예민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건, 하급치리회에서 해결 못한 사건, 상반된 이해관계의 충돌로 하급치리회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건, 2 혹은 3개의 하급치리회 사이에서 갈등과 의견 불일치가 있는 사건이 해당된다. 조회는 사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다. 하급치리회가 상급치리회에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비사법적조회이고, 사법우선권을 상급치리회에 이관하는 것은 사법적조회이다.(제6장 참조)

2.29 **회개.**⁶¹ 범죄인이 지은 범죄를 통회하고 증오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행위이다. 이런 회개를 증명하는 화합, 보상 등 진심으로 달라진 것을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2.30 **보상.**⁶²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치리회가 범죄인에게 처벌없이 보상만 판결하거나 처벌에 추가하여 보상을 내릴 수 있다. 범죄인이 합리적인 보상판결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는 범죄로 다스려져야 하므로, 치리회는 범죄인의 보상능력을 신중히 살핀 후, 보상을 명할 수 있다.

⁶⁰ 사도행전 15:1-2, 갈라디아서 1:15-2:2.

⁶¹ WCF XV.5-6,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 Q.76,153. 마태복음 3:8, 사도행전 26:20b

고린도후서 7:10-11, 야고보서 4:8-10.

⁶² WCF XV.6, 출애굽기 22:1,3-6,14, 레위기 6:2-5, 누가복음 19:8.

2.31 **복권.**⁶³ 범죄로 인해, 정직, 면직, 출교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후 평안, 화목, 합당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합당한 때에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다시 확인하며, 다시 교회의 교인으로 회복되어 교인이 갖는 모든 혜택과 교회의 직분(합당한 경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32 **치리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회나 노회의 회원은 치리 중에 있는 것이다: 기소인이 기소를 위해 조사 중에 있는 사람; 소송을 당해 소송 중에 있는 사람; 치리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치리회의 판결에 따라 치리 중에 있는 사람.

⁶³ WCF XXX.2, 누가복음 15:6-7, 22-24, 32, 고린도후서 2:6-8, 히브리서 4:11-12.

제 3 장

개인적인 범죄 혹은 사적인 범죄에 대한 절차

- 3.1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범죄를 했다고 믿거나,⁶⁴ 잘못, 범죄를 행한 경우,⁶⁵ 이 범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⁶⁶ 피해받은 교인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그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
- A.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 한 가해자를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며, 용서하도록 한다.
 - B. 가해자가 회개하고 화목하기를 거절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증인과 함께 다시 찾아가서 회개하고 화목하며 잘못을 고치게 하도록 한다.
 - C.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도 가해자가 회개하고 화목하기를 거절하면, 피해 받은 교인은 소속 치리회를 찾아가 보고하여, 치리회가 처리하도록 한다.
 - D. 개인적 혹은 사적인 범죄의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절차를 먼저 시도하지 않고는, 교회치리회에 보고할 수 없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직원에게 자문이나 협조를 구한 것은 교회치리회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E. 이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 사적인 범죄는 교회치리회에 보고할 것이며, 이 범죄는 일반적, 공적인 범죄로 다스려진다.⁶⁷(제4장 참조)
- 3.2 교회지도자들은 법적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⁶⁸

⁶⁴ 마태복음 18:15-18.

⁶⁵ 야고보서 5:19-20.

⁶⁶ 잠언 19:11.

⁶⁷ 마태복음 18:17.

⁶⁸ 고린도전서 6:7-8, 에베소서 4:32, 골로새서 3:13.

제 4 장

일반적인 범죄 혹은 공적인 범죄에 대한 절차

- 4.1 일반적 혹은 공적인 범죄에 대한 혐의는 그 사건에 대한 사법우선권을 가진 치리회에 제출돼야 한다. 치리회는 다른 사람에게나 기관에 대해 범죄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치리회의 조사결과 근거가 없거나 경솔한 행동으로 판명될 경우, 치리회로 부터 치리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⁶⁹
- 4.2 조사.
- A. 교회치리회가 일반적 혹은 공적인 범죄에 대한 혐의를 접수한 경우,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조사관을 임명하여, 최선을 다해 아래 기재된 일들을 해야 한다:
1. 양쪽 모두의 증인들을 면접하며, 모든 관계 서류들과 증거물들을 확인한다.⁷⁰
 2.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 (a) ARPC 교단 소속된 교회의 무흠입교인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b)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에 대해 알린다;
 - (c) 범행입증을 위해 제출된 증거에 대해, 반론할 수 있다;⁷¹
 - (d) 혐의에 대해 자기변호를 할 수 있다;

⁶⁹ 출애굽기 20:16, 신명기 5:20, 19:18-19, 잠언 17:27.

⁷⁰ 창세기 11:5, 신명기 19:15, 이사야 43:9.

⁷¹ 잠언 18:13; 15:17, 이사야 50:8.

B. 조서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치리회에 제출한다: 증인 면접 후, 확보한 피해자 이름과 면접내용을 포함한 증인의 진술서; 범죄에 관계된 서류들이나 증거물의 사본들;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피의자와의 면접결과 보고서:

1. 조서관이 범행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믿는⁷² 근거(의견으로 참조될 뿐임);
2.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거나 안했다는 사실.⁷³

4.3 **논쟁과정이 불필요한 사건.** 치리회가 조서관을 임명하기 전이나, 조서관의 보고에 의해서나 범죄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⁷⁴치리회는 자백을 문서로 기록 하고 치리가 필요하다면, 치리절차를 시작한다.

4.4 **논쟁과정이 필요한 사건.**

A. 조서관임명 : 조사보고서를 받은 치리회가 정계가 필요한 범죄가 있었다고 결론지으면, 해당범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시행돼야 한다. 기소장에는 가능한 한 범죄시간, 범죄장소, 배경을 기록해야 한다.(Appendix 1, Form 1 참조)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도, 범죄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치리회는 뒤에 규정된 바를 따라 정식으로 치리절차를 시작해야 한다.⁷⁵ (조서관은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기소인이 된다.)

⁷² 신명기 13:14.

⁷³ 신명기 19:15, 고린도후서 13:1.

⁷⁴ 마태복음 3:8, 누가복음 3:8.

⁷⁵ 마태복음 18:16-17.

B. 재판 전 청문: 피고에게 기소통보와 치리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전달돼야 하며, 피고는 출두하여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재판 전 심문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이 사건은 논쟁불필요사건으로 다루어진다. 피고가 범죄를 인정하지만 회개나 고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치리회는 재판을 포기하고 피의자를 치리한다. 만일,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치리회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배정해주며, 재판일을 정한다. 재판일은 조사관, 피의자, 변호인 모두가 충분히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정해져야 한다. 재판은 재판전 청문일로 부터 최소한 14일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피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전 청문에 출두하지 못했으면, 치리회는 다른 날자를 정해 재판전 청문을 할 수도 있다. 만일 피의자가 재판전 청문 출두를 거부하면, 법정모독으로 치리처벌 한다.

C. 기소당한 피고와 증인 모두에게 재판출두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소환장은:

1. 최소 재판 14일 전에는 기소된 피고와 증인들에게 보내야 하며, 필히 출두할 것을 지시한다.(Appendix 1. Form 8 참조) ARPC 교인이 아닌 증인에게는 단순한 출두요청만 보낸다.
2. 가능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거나 최근의 거주지로 등기우편으로 전달한다.
3. 치리회서기나 의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증인이 ARPC 교인인 경우, 소환에 불응하면 치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어야 한다. 출두 후, 증인은 재판장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참석해 있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이 기꺼이 재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면, 퇴정하도록 배려한다.
5.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오도록 배려하여 증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치리회와 참

석자들은 소환된 증인의 스케줄을 배려하고, 심문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최대로 노력할 것이다.

- D. 치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날을 정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 E. 치리회는 재판과정을 음성녹음, 영상녹음,⁷⁶ 혹은 치리회 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모든 참석자에게 녹음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⁷⁷
- F. 재판장은 모든 진행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⁷⁸ 재판장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과 사람이 하는 판결과 처사를 무오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⁷⁹ 모든 진행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기도는 필요할 때 마다 할 수 있다.⁸⁰
- G. 피고가 출두하지 않으면, 치리회는:
 - 1. 법정모독죄임을 선포하고 그를 치리하거나;
 - 2. 재판을 다른 날에 계속한다.(4.6 참조)
- H. 재판순서, 재판과의 관련성여부, 증거인정 등의 모든 사항은 재판장이 결정한다. 재판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론하지 않고 투표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 I. 재판장은 선서를 받으며, 모든 증인들에게 진실만을 증언하도록 지시한다.⁸¹(Appendix 1. Form 7 참조)

⁷⁶ 많은 경우, 영상녹음이 음성녹음보다 좋다. 상급치리회에 항소하는 경우 음성녹음 보다 더 좋은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⁷⁷ 예레미야 32:10-12.

⁷⁸ 고린도전서 14:40.

⁷⁹ 야고보서 4:7-12.

⁸⁰ 누가복음 18:1-8, 데사로니가전서 5:18-22.

⁸¹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 Q.144, 출애굽기 20:19, 욥기 27:1-4, 예레미야 4:2, 요한복음 14:17.

- J.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증언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치리회는 나이, 지적수준, 성격, 신앙, 편파성,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증인이 ARPC 교인인데, 출두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치리회는 이를 치리한다.⁸²
 2. 피고가 증언하도록 허락하되, 강제하지는 말며,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부정적인 추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⁸³
 3.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대적하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⁸⁴
 4. 재판에 참석해 있는 재판국원이 증언을 하는 경우, 치리회가 이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에 관계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결정하면, 더 이상 재판에 관계할 수 없다.
- K.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돼야 한다:
1. 기도로 시작한다.
 2. 시작진술. 먼저 조사관, 다음 피고 혹은 그의 변호인이 진술한다.
 3. 기소사건. 조사관 혹은 조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증인을 증언케 하고 재판장으로 부터 인정 받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사건을 기소한다. 피고나 그의 변호인 그리고 모든 재판국원들은 증인들에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조사관은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기소인이 된다.)

⁸² 레위기 5:1.

⁸³ 이사야 53:7.

⁸⁴ 창세기 2:24.

4. 변호. 피고나 피고의 변호인은 자기의 증인을 증언케 하고 재판장이 인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 사건을 변호한다. 기소인, 피해자 혹은 그의 변호인 그리고 모든 재판국원들은 증인들에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5. 최후진술. 먼저 기소인 혹은 기소인이 지정하는 사람, 다음에 피고나 피고의 변호인이 사실이나 성경, ARPC 헌법, 사건에 합당한 치리에 대해 최후주장을 한다.
 6. 심사숙고. 치리회는 모든 증거들을 살핀 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심사숙고 하여, 하나하나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논란이 있거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판결함이 바람직 하다.⁸⁵
 - a. 과반수 이상의 재판국원이 피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시킨다.
 - b. 과반수 이상의 재판국원이 범죄주장 자체가 적절치 않고, 경솔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범죄를 주장한 사람을 처리한다.⁸⁶
 - c. 과반수 이상의 재판국원이 피고의 범행을 인정하면, 재판을 잠시 휴정할 수도 있으며, 속회시, 판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범죄와 적절한 처벌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준다.⁸⁷
 7. 판결과 처리내용을 공포. 치리회는 판결과 처벌내용을 공포한다.
 8. 기도로 마침.
- L. 재판의 어떤 부분도(재판전 심문, 재판, 처리판결을 포함) 비공개 또는 비밀회의에서 다룰 수 없다.

⁸⁵ FOG 3.25G.

⁸⁶ 잠언 11:1; 30:12, 마태복음 5:37.

⁸⁷ 로마서 13:1-3, 고린도후서 2:6, 베드로전서 4:15-17.

M. 치리회서기는 아래사항을 포함하는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세부사항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기소장;
2. 참석한 모든 사람의 명단;
3. 모든 증인들의 명단과 증언기록;
4. 재판 중에 사용된 모든 서류, 문서 또는 인정, 채택된 증거물들;
5. 재판 중 제기된 모든 반론과 이에 대한 답변;
6. 치리회의 판결;
7. 치리회가 선포한 처벌내용 및 제기 된 이의나 반대내용.

4.5 재판시 아래기준에 합당해야 증거가 된다:

- A. 진실임이 증명된 문서나 증거물.⁸⁸
- B.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범죄를 행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2인 이상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⁸⁹
 2. 1인의 증인이더라도 별도의 증거로 범죄가 입증 되는 경우; 혹은
 3. 범죄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로 범죄가 입증될 경우.
- C. 재판장은 특별히 믿을만하다고 할 이유가 없으면 통상 소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⁹⁰
- D. 기소인이나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가 성경적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재판장이 하나, 재판장의 결정에 항소가 있는 경우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한다.

⁸⁸ 신명기 19:15, 이사야 43:9, 마태복음 5:33-37.

⁸⁹ 신명기 19:15, 마태복음 18:16, 요한복음 5:31-40, 고린도후서 13:1, 디모데전서 5:19.

⁹⁰ 잠언 26:20-23.

- E. 증인이 정식재판에 출두할 형편이 안되나, 증인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증거가 채택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한다.⁹¹
- F.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한 교회치리회의 기록은 원본, 사본 모두 다른 치리회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개인적인 기록물과 인쇄된 출판물 본인의 것이 입증되면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⁹²

4.6 범죄피의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출두할 수 없는 경우의 절차. 범죄피의자가 사람의 힘으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징계진행 중 출두하지 못할 때는 치리회는 재판을 다른 날에 한다.⁹³ 그러나 범죄피의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출두하지 않으면, 치리회는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4.7 재판은 통상 치리회가 직접 한다. 그러나 치리회가 사건을 청문하는 주요책임을 위원회(committee)에 위임하여 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와 합당한 처벌을 추천받아 검토한 후, 판결하거나, 위원회(commission)를 임명하여, 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고 치리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위원회(commission)가 내리는 판결은 이것으로 최종판결이 된다.

⁹¹ 잠언 18:17.

⁹² 예레미야 32:9-15.

⁹³ 로마서 13:5.

4.8 모든 진행은 신중하게 “권징조례”의 규정을 따라 가능한 속히 시작한다. **도덕적추문 사건**은 최근 더 노골적 혹은 악화되지 않은 한, 범죄 후 1년 이내 혹은 사건이 알려 진 후 1년 이내에 **사법절차가** 시작돼야 한다.⁹⁴이 단사건인 경우는 기소시간의 제한이 없다. 사건이 세상 법정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회치리회는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1) 치리회의 진행으로 범죄피의자의 입장을 세상법정에서 위험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경우; (2) 교회치리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세상법정으로 끌려가는 일을 막기 위한 경우; (3) 치리회가 교회가 치리하는 목적을 언제 달성할 수 있게 될지를 결정할 때 까지.⁹⁵

4.9 치리를 알리는 범위. 범죄가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와 비례한다. 견책치리의 경우, 범죄가 사적으로 행해졌으면, 사적으로 본인에게만 알린다. 범죄가 일반적이며 공적으로 행해졌으면, 치리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교회치리회는 어떤 치리가 합당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1차 치리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추가재판 없이 그 다음 윗단계의 치리로 처벌한다. (Appendix 1 참조)

A. 견책.⁹⁶ 재판장은 견책의 치리를 공포해야 한다. (Appendix 1, Form 3 참조)

⁹⁴(신체적학대, 정신적충격, 아동성적학대 등) 정황이 있는 경우, 치리회는 범죄발생시기와 관계없이 권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⁹⁵ 1.6 참조

⁹⁶ 잠언 17:10; 28:23.

- B. 정직.⁹⁷ 재판장은 정직의 처리를 공포해야 한다. (Appendix 1, Form 4 참조)
- C. 면직.⁹⁸ 재판장은 교회의 직분을 박탈하는 면직처리의 모든 과정, 필요성과 면직의 의미를 다시 살펴야 하며, 이를 소속 교회의 교인들에게 공포해야 한다. 목사가 출교당함 없이 면직을 당했으면, 노회는 그를 기꺼이 받아주는 교회의 교인으로 배정한다. (Appendix 1, Form 5 참조)
- D. 출교.⁹⁹ 재판장은 출교처리의 모든 과정, 필요성과 출교의 의미를 다시 살펴야 하며, 이를 소속교회의 교인들에게 공포해야 한다. (Appendix 1, Form 6 참조)
- E. 모든 처리의 경우, 교회와 치리회, 범죄인을 위한 기도로 종결한다.

⁹⁷ 디도서 1:15; 2:15; 3:10-11.

⁹⁸ 디도서 1:10-11.

⁹⁹ 마태복음 18:17, 고린도전서 5:5.

제 5 장

항소와 이의제기

- 5.1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급치리회의의 결정에 대해 차상급 치리회¹⁰¹에 항소¹⁰⁰할 수 있다:
- A. 치리받은 개인이나 기관(entity);
 - B. 범죄의 피해자;
- 5.2 하급치리회의 결정이나 판결에 참여했던 사람은 상급 치리회원이 되어 판결할 수 없다.
- 5.3 항소하면 하급법원이 판결한 출교와 면직치리의 효력은 상급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견책, 정직의 치리는 항소를 하더라도 수관정지나 직분정지를 뒤집을 수 없다.
- 5.4 항소는 아래에 기재된 사유나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 A. 판결의 증거가 불충분할 때(그러나 증인의 신뢰성은 재평가 할수 없다. 증인의 신뢰성은 증언을 청취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평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 B. 증거가 잘못에 의해 인정 혹은 불인정된 됐거나 교리나 교단헌법 해석이 잘못된 경우;
 - C.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경우;
 - D. 치리회원에게 편견이 있는 경우;
 - E. 적용된 처벌이 증거나 사건성격에 비해 다소 과중한 경우;
 - F. 기타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 부정이나 이상이 있었던 경우.

¹⁰⁰ 정치 10.3B; 12.25C.

¹⁰¹ 사도행전 15:2.

5.5 재심치리회가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심치리회는 원심을 재확인한다.

5.6 상급치리회는 사실에 근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급치리회가 한 일들을 존중해야 한다. 관계된 사건들과 증인들에 대해서는 하급치리회가 더 잘 알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나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5.7 항소절차¹⁰²

- A. 항소하기 위해서, 항소인은 판결공포 후 30일 이내에 상급치리회의 서기에게 보낸 항소장의 사본과 함께 판결을 내린 치리회의 서기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하급치리회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가능한 빨리 상급치리회에 보내야 하는데, 항소통지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 B. 하급치리회가 항소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45일 이내에 상급치리회에 사건관계서류를 발송하지 않으면, 하급치리회가 내린 처리는 사건관계서류를 상급치리회에 보낼 때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 C. 상급치리회는 항소인이나 하급치리회의 결정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부터 구두변론을 듣거나 하급치리회로부터 받은 기록을 보고, 자체판단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D. 항소절차 진행 중, 항소치리회의 사건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나 항소인이 모르던 증거가 나온 경우, 항소치리회는 사건을 하급치리회로 반송, 새로 재판을 하게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받은 뒤, 새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후, 자체판단으로 항소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¹⁰² 사도행전 11:1-4;25:11.

E. 구두변론이 있는 후, 치리회는 항소사건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논쟁을 마친 다음, 치리회는 항소사유 하나 하나가 근거가 있는지를 투표로 정해야 한다. 항소 사유 전부가 인정받지 못하면 항소는 기각된다. 항소 사유 중 일부나 혹은 전부를 인정받으면, 상급치리회는 하급치리회의 판결 중 일부를 확정하거나 전부를 파기할 수 있으며; 재심을 위해 사건을 하급치리회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혹은 상급치리회가 직접 재심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상급치리회의 판결은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그 사본을 하급치리회와 항소인에게 보내야 한다.

5.8 상급치리회는 항소요건을 갖춘 항소건을 다루어야 하며,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을지라도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항소를 다루어야 한다.

5.9 상급치리회는 자체판단 하에 최종결정권만 제외하고,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회나 치리회 내의 다른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¹⁰³

5.10 상급치리회는 항소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세한 설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¹⁰³ 사도행전 15:30-33.

5.11 항소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하급치리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항소인이 항소 후, 유효한 출두통지서를 받았는데도 항소인 본인이나 그 변호인이 상급치리회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¹⁰⁴ 항소인의 항소는 종결된다. 항소인은 치리회에 서면을 보내 법정출두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항소인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 항소인이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여 출두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하급치리회의 판결은 계속 유효한 판결이 된다.

5.12 이의제기는 치리회의 어떤 행위나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항소와는 달리, ARPC 교회나 노회에 속한 무흠입교인 이면, 본인이 속한 치리회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항소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5.13 이의제기 절차.

A. 상급치리회에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행위나 판결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치리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제기는 치리회의 잘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거와 함께 잘못된 행위나 판결 후 60일 이내에 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치리회는 다음 정기회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모임을 갖고 이의제기를 다루어야 한다.

¹⁰⁴ 사소행전 15:22-29.

- B. 하급치리회가 투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을 과기하면 이것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하급치리회가 투표하여 이의제기를 거부하면,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다음 상급치리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급치리회의 최종판결 후 30일 이내에 상급치리회의 서기와 하급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급치리회의 서기는 이의제기 통지를 받고 45일 이내에 사건에 관계된 서류나 회록과 함께,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치리회는 하급치리회의 서기를 서면으로 견책하며, 하급치리회의 서기가 관계된 서류나 회록을 보낼 때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 판결의 효력은 그 때까지 중지된다.
- C. 상급치리회는 이의제기한 사람과 하급치리회의 판결을 변호하도록 임명된 사람으로부터 구두변론을 듣는다.
- D. 구두논쟁 후, 상급치리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살핀 후에, 투표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부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상급치리회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하급치리회의 결정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지시사항을 첨부하여 하급치리회로 돌려보낸다.

5.14 상급치리회는 자체판단 하에 최종결정권을 제외하고,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회나 치리회 내의 다른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15 상급치리회는 이의제기에 대해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세한 설명서를 발부해야 한다.¹⁰⁵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¹⁰⁵ 사도행전 15:22-29.

제 6 장

자문 및 지원요청

- 6.1 하급치리회가 상급치리회에 맡은 사건에 대해 조언이나 지시(비사법적조회?) 혹은 사건전체를 맡아달라는 서면요청(사법적요청)이다.¹⁰⁶
- A. 다루기에 예민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건, 하급치리회에서 해결 못한 사건, 상반된 이해관계의 충돌로 하급치리회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건, 2 혹은 3개의 하급치리회 사이에서 갈등과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서면요청이다.
- B. 이것을 어려운 결정 내리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¹⁰⁷
- 6.2 자문이나 지원요청은 진행 중 특정한 상황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지서는 사건관련당사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모든 증거물과 기록물을 신속히 상급치리회에 보내 사건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6.3 상급치리회의 서기는 요청받은 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 6.4 하급치리회의 치리회원이었던 사람도 이해가 상반되면 반대한 다는 조건으로 상급치리회의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
- 6.5 조회요청을 받은 상급치리회는 통상 자문을 주지만, 자문을 주느냐, 안주느냐, 사건전체를 인수하느냐 아니면 지시사항을 첨부하여 반송하느냐? 지시사항없이 반송하느냐?는 전적으로 상급치리회의 판단에 달려있다.

¹⁰⁶ 열왕기상 12:6-19, 잠언 1:1-7; 11:14; 15:22.

¹⁰⁷ 잠언 3:12, 히브리서 12:6; 13:17.

제 7 장 복 권

- 7.1 복권은 정직, 면직, 출교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후 회개하고 평안, 화목, 합당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합당한 때에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다시 확인하며, 다시 교회의 교인으로 회복되어 교인이 갖는 모든 혜택과 교회의 직분(합당한 경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¹⁰⁸
- 7.2 복권은 교회권징의 목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회개, 참회한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서둘러 허락해서는 안 된다. 치리처벌 중에 있는 사람은 복권결정을 받기 전, 상당한 기간을 통해, 참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¹⁰⁹
- 7.3 치리절차를 진행 중, 범죄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회개, 화해, 합당한 배상을 하기 원하면, 치리회는 절차를 중단하고, 치리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목회지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치리회의 지시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고 화합을 이루겠다는 진지함과 마음의 준비를 보여주는 표시이다.¹¹⁰ 그러나 실제로 이를 행하지 않아, 치리회가 그 회개가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치리회는 이미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한다.

¹⁰⁸ WCF XV.4, 누가복음 15:7, 10: 11-32, 에베소서 2:13-19, 빌레몬서 1:15-16.

¹⁰⁹ WCF XV.5, 시편 51:3-12, 잠언 28:13.

¹¹⁰ WCF XV.6, 시편 51:17.

- 7.4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성장됨을 통해, 완 전복권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축제가 된다. 치리가 사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치리이면, 복권도 역시 은밀히 시행한다; 공개적으로 행해진 치리는 복권도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축하한다.¹¹¹ 출교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교우서약을 다시 해야 하며, 오른손으로 악수한 후, 받아들인다.¹¹²
- 7.5 범죄성격에 따라 어떤 범죄의 경우는 복권되더라도, 교회직분을 받지 못하며, 교회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¹¹³ 정직이나 면직처벌을 받았고 교회가 주는 특권을 정직 당했던 직원은 회개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인 경우에 교회가 주는 특권을 회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직분은 복권해도 교회의 증인으로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상당기간, 직분을 회복 할 수 없다.
- 7.6 복권은 치리처벌을 내린 치리회의 권한이다. ARPC 교회의 치리회로부터 치리받은 교인은 복권되지 않는 한, 다른 교회로 이명허락을 받을 수 없다.¹¹⁴
- 7.7 죄를 지은 경우, 모든 경우가 다 복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권 받을 수 없는 경우, 강조돼야 할 점은, 교회치리의 목적이 범죄인의 복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평안, 순결, 부흥과 하나 됨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조돼야 한다.¹¹⁵

¹¹¹ 시편 32:1.

¹¹² 야고보서 5:19-20.

¹¹³ 창세기 32:30-32, 사무엘하 7:1-29.

¹¹⁴ 디모데후서 4:14-15.

¹¹⁵ 갈라디아서 6:9-10, 데살로니가전서 5:11, 야고보서 3:16-18.

제 8 장 탈 퇴

8.1 유형교회는 온 세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유형교회에 속한 등록교인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사명이고 의무이다. 교인이 교적을 다른 교회로 이명하지 않고, 교회에서 탈퇴하려 하는 경우, 사법권을 가진 소속교회의 치리회는 이런 행위는 배교와 동등한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본인이 자신을 유형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본인 스스로 출교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도 탈퇴를 주장하면, 치리회는 그 이름을 교인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치리처별 중에 있는 교인이나 목사가 교회치리회에 회부되는 것보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교회치리회는 그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한다. 이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뿐이지, 신앙적으로는 출교와 동일한 것이다.

제 9 장

기타 사항들

9.1 치리는 복잡한 교회생활의 일부분이다. 치리에 관해 본권징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는 치리회의 결정에 맡긴다. 그러나 해당치리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과 ARPC 헌법에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1장 및 Appendix 4 참조)

9.2 교회가 진행하는 절차는 성경과 ARPC 헌법에 따라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치리회는 로마서 13:1-7 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23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상권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BOOK OF DISCIPLINE-APPENDIX 1

FORMS

FORM 1: CHARGE

The following form may be used:

IN THE MATTER OF:
{Alleged offender's name}

BEFORE THE *{name of court or commission}*

CHARGE:

YOU, *{alleged offender's name}*, ARE HEREBY CHARGED WITH HAVING COMMITTED THE OFFENSE OF *{name of alleged offense}* ON OR ABOUT *{date}* OR FROM ON OR ABOUT *{date}* THROUGH ON OR ABOUT *{date}*, IN THE FOLLOWING PARTICULARS: *{provide tactful or generic description of the alleged offense}*.

YOU ARE HEREBY REQUIRED TO APPEAR ON *{date and time}* BEFORE *{name of court or commission}* AT *{address at which to appear}* FOR THE PURPOSE OF ANSWERING TO THIS CHARGE. YOU MAY BRING ANY WITNESS[ES] YOU HAVE, AND YOU MAY BE REPRESENTED BY AN ADVOCATE, WHO IS AN ELDER IN GOOD STANDING IN THE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DATE:

CLERK OF THE COURT

FORM 2: REBUKE:

The following format may be used:

IN THE MATTER OF:
{Offender's name}

BEFORE THE *{name of court}*

REBUKE:

YOU, *{name of offender}*, BY YOUR CONTINUED NEGLECT OF YOUR CHRISTIAN DUTY AND BY THE OFFENSE OF *{name of offense}*, HAVE BROUGHT REPROACH ON YOURSELF, AND HAVE GIVEN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MOCK HIM. YOU ARE HEREBY REBUKED FOR YOUR OFFENSE OF *{name of offense}*. YOU ARE COMMANDED TO GIVE EVIDENCE OF SINCERE REPENTANCE, AND TO BE MORE WATCHFUL, STUDYING TO KNOW AND TO DO THE WILL OF GOD.

FORM 3: SUSPENSION:

The following format may be used:

IN THE MATTER OF:
{Offender's name}

BEFORE THE *{name of court}*

SUSPENSION:

YOU, *{name of offender}*, HAVE COMMITTED THE OFFENSE OF *{name of offense}*. THEREFOR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YOU ARE SUSPENDED FROM THE PRIVILEGES OF CHURCH MEMBERSHIP, INCLUDING PARTICIPATION IN THE SACRAMENTS, UNTIL YOU HAVE GIVEN SATISFACTORY EVIDENCE OF

TRUE REPENTANCE, AND HAVE BEEN RESTORED TO GOOD STANDING BY THIS OR A HIGHER COURT OF THE CHURCH.

DATE:

CLERK OF THE COURT

FORM 4: REMOVAL FROM OFFICE:

The following format may be used:

IN THE MATTER OF: BEFORE THE *{name of court}*
{Offender's name}

REMOVAL FROM OFFICE:

YOU, *{name of offender}*, HAVE COMMITTED THE OFFENSE OF *{name of offense}*. THEREFOR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YOU ARE REMOVED FROM THE OFFICE OF *{name of office}*, AND YOU ARE FORBIDDEN TO PERFORM ANY OF THE DUTIES BELONGING TO IT, UNTIL YOU HAVE GIVEN SATISFACTORY EVIDENCE OF TRUE REPENTANCE, AND HAVE BEEN RESTORED TO GOOD STANDING BY THIS OR A HIGHER COURT OF THE CHURCH.

DATE:

CLERK OF THE COURT

FORM 5: EXCOMMUNICATION:

The following format may be used:

IN THE MATTER OF: BEFORE THE *{name of court}*
{Offender's name}

EXCOMMUNICATION:

YOU, *{name of offender}*, HAVE COMMITTED THE OFFENSE OF *{name of offense}*, AN OFFENSE DESERVING THE EXTREME PENALTY OF EXCOMMUNICATION. YOU HAVE GIVEN NO EVIDENCE OF REPENTANCE, DESPITE EFFORTS TO RESTORE YOU. THEREFOR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YOU ARE EXCOMMUNICATED FROM THE CHURCH. MAY GOD HAVE MERCY UPON YOU.

DATE:

CLERK OF THE COURT

FORM 6: OATH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 may be used:

Do you swear (or affirm) by the Living God that you will tell the truth, the complet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as far as you know it, as you shall answer to God in the judgment?

FORM 7: SUMMONS

IN THE MATTER OF:		BEFORE THE
		SUMMONS FOR
		☐ PERSON ☐ DOCUMENT(S) OR OBJECT(S)
TO:		
☐ YOU ARE HEREBY COMMANDED to appear at the place, date, and time specified below to testify in the above-entitled case.		
PLACE		
	DATE AND TIME	
☐ YOU ARE ALSO COMMANDED to bring with you the following document(s) or object(s).		
LIST DOCUMENT(S) OR OBJECT(S)		
This summons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you are granted leave to depart by the court. If you are a member of an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r court, failure to obey this Summons to appear may result in censure.		
CLERK OF COURT		DATE

PROOF OF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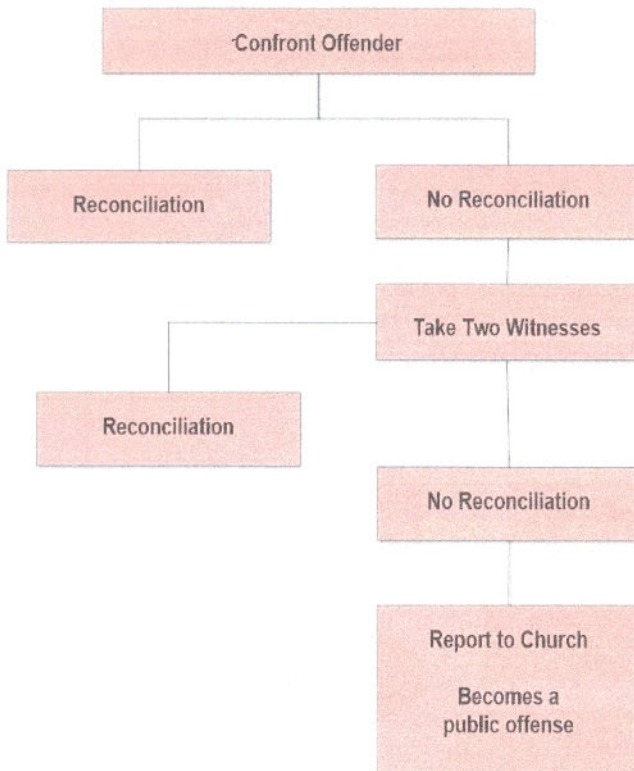
SERVED	DATE	PLACE
SERVED ON (PRINT NAME)		MANNER OF SERVICE
SERVED BY (PRINT NAME)		TITLE

DECLARATION OF SERVER

I certify that the forgoing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roof of Service is true and correct.	
Executed on	_____
	SIGNATURE OF SERVER
	ADDRESS OF SERVER

Book of Discipline - Appendix 2 - A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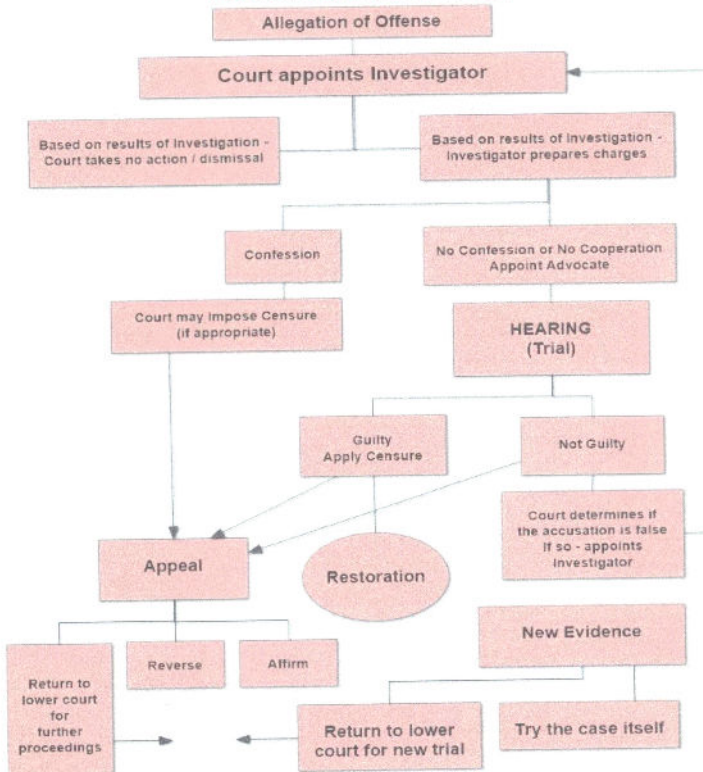
PRIVATE / PERSONAL OFFENSE (Matthew 18)



*Flow charts are provided as a tool to assist courts in working through biblical discipline.
Ultimate confidence in biblical discipline rests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ot in the process.

Book of Discipline - Appendix 2 - B
Flow Chart*

PUBLIC / GENERAL OFFENSE



*Flow charts are provided as a tool to assist courts in working through biblical discipline. Ultimate confidence in biblical discipline rests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ot in the process.